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나502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찬성, 김형근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 선고 2020가단24602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C 사이에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이하 ‘별지’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2019. 8.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6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3,937,1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충하고, 제1심판결 제4쪽의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의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가액 배상금액은”부터 제5쪽 첫 번째 줄까지를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2의 나’항에 추가하여 보충하는 판단

피고는, 채무자 C이 피상속인 E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증여받거나 피고 등 상속인들로부터 이자의 지급 등으로 많은 지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 결과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2)를 포함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특별수익 등이 있어 그것으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별지 1 내지 6 부동산의 2020. 1. 1. 기준 공시가격은 1,232,603,200원(= 352,560,000+221,000,000+321,363,200+320,000,000+17,680,000)(갑5)이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최고액은 435,500,000원이므로, 피고의 별지 1 내지 6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 배상금액은 132,850,533원{=(위 공시가격 1,232,603,200원-채권최고액 435,500,000원)×피고의 수익 1/6, 원미만 버림}이나 되어 그것만1) 으로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43,937,124원보다 많아,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3,937,12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희석, 판사 오연정, 판사 허준서

1) 별지 7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은 별지 1 내지 6 부동산의 가액배상만이라는 의미이다.